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6월 1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, 적정 인력 지원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8,144명에서 18,167명으로 23명 증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

증원 : 23명

나.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직급조정 :

본청 5급이하 △1 → 본청 4급 +1

구분	정원 총계	일반직			연구직			소방공무원		
		소계	4급 이상	5급 이하	소계	연구관	연구사	소계	소방정 이 상	소방령 이 하
현행	18,144	10,242	293	9,949	370	59	311	6,979	35	6,944
조정	18,167	10,242	294	9,948	370	59	311	7,002	35	6,967
증감	+23	-	+1	△1	-	-	-	+23	-	+23

※ 정원 총계는 정무직, 별정직, 지도직, 교육공무원을 포함

다. 남세자보호관 지정·운영을 위한 관리기관 간 정원 이관 :

본청 5급이하 △1 → 합의제행정기관 5급이하 +1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관련 부서와 합의하였음(비용추계서 참고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신설 강화 규제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 설치) : 해당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 : 원안동의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제외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평가제외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갈등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(2) 입법예고('18. 5. 17. ~ 5. 23.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서 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8,144명”을 “18,16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0,217명”을 “10,216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6,979명”을 “7,00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150명”을 “15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“18,144”를 “18,167”로 한다.

같은 표 일반직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급	232	140	16	7	65	4
----	-----	-----	----	---	----	---

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“9,852”를 “9,851”로 한다.

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“6,979”를 “7,002”로 한다.

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“6,944”를 “6,967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8,144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 <u>10,217명</u></p> <p>2.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: <u>6,979명</u>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<u>150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8,167명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/p> <p><u>10,216명</u> -----</p> <p>----- <u>7,002명</u>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151명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【별표 3】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 회 사무처</th> <th>직 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18,144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0,24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3</td> <td>1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u>231</u></td> <td><u>139</u></td> <td>16</td> <td>7</td> <td>65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이하 소계</td> <td><u>9,852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9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총 계	<u>18,144</u>						정무직 계	2						일반직 계	10,242						1급	7	6	1				2·3급	23	18		1	3	1	3급	17	7		1	9		3·4급	5	5					4급	<u>231</u>	<u>139</u>	16	7	65	4	4·5급	10	10					5급이하 소계	<u>9,852</u>						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<p>【별표 3】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 회 사무처</th> <th>직 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18,167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0,24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3</td> <td>1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u>232</u></td> <td><u>140</u></td> <td>16</td> <td>7</td> <td>65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이하 소계</td> <td><u>9,851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9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총 계	<u>18,167</u>						정무직 계	2						일반직 계	10,242						1급	7	6	1				2·3급	23	18		1	3	1	3급	17	7		1	9		3·4급	5	5					4급	<u>232</u>	<u>140</u>	16	7	65	4	4·5급	10	10					5급이하 소계	<u>9,851</u>						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8,144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0,24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3	18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7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u>231</u>	<u>139</u>	16	7	65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<u>9,852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8,16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0,24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3	18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7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u>232</u>	<u>140</u>	16	7	65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<u>9,85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별정직 계	29						별정직 계	29					
연구직 계	370						연구직 계	370					
연구관	59	5		32	22		연구관	59	5		32	22	
연구사	311						연구사	311					
지도직 계	24						지도직 계	24					
소방공무원 계	6,979						소방공무원 계	7,002					
소방준감	5	4		1			소방준감	5	4		1		
소방정	29	2		27			소방정	29	2		27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
소방령 이하 계	6,944						소방령 이하 계	6,967					
교육공무원 계	498						교육공무원 계	498					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8,144명에서 18,167명으로 총 23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
(소방공무원 +23명 외 일반직 직급조정 1명 포함)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18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인건비	814,474	1,671,301	1,714,755	1,759,339	1,805,082	7,764,951
	소계(b)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총 비용(a-b)		814,474	1,671,301	1,714,755	1,759,339	1,805,082	7,764,951

※ 매년 인건비 상승률 2.6%('18년 기준) 적용 추계, 1차년도는 하반기 개정시행 고려 50% 적용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814,474	1,671,301	1,714,755	1,759,339	1,805,082	7,764,951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814,474	1,671,301	1,714,755	1,759,339	1,805,082	7,764,951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24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정원 변동내역 : +23명

○ 일반직 : 직급조정 1명

- 4급 +1, 5급 △1

○ 소방공무원 : +23명

- 소방경 +1, 소방위 +3, 소방장 +4, 소방교 +6, 소방사 +9

2. 비용소요 추계 : 1,628,948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소요비용	세부내역	비고
합계	1,628,948	<p>◆ 총계 : +1,628,948</p> <p>○ 일반직(-) : +3,831</p> <p>▷ 4급(+1) : 107,947 × 1명 = 107,947</p> <p>▷ 5급(△1) : △104,116 × 1명 = △104,116</p> <p>○ 소방공무원(+23) : +1,625,117</p> <p>▷ 소방경(+1) : 101,728 × 1명 = 101,728</p> <p>▷ 소방위(+3) : 94,436 × 3명 = 283,308</p> <p>▷ 소방장(+4) : 83,410 × 4명 = 333,640</p> <p>▷ 소방교(+6) : 66,046 × 6명 = 396,276</p> <p>▷ 소방사(+9) : 56,685 × 9명 = 510,165</p>	'18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